

배수설비 설치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설치자	법인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
설치 신고	설치목적	생활오수, 산업폐수, 축산폐수 방류			
	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	재질	염화비닐관, 주철관, 흙관, PC, 도기, 기타	접속방법	기계뚫기, 인력뚫기, 맨홀접속
		평균관경	∅ mm	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	m
	설치위치	시·군·구	도로명	건물번호(법정동)	
	배출수량	m ³ /일			
	공사착공 연월일	년 월 일	공사준공 예정일	년 월 일	
	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			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	
공공하수도 복구방법	원상복구, 부분복구, 일시복구				

사용 시작 신고	배출수량 및 수질	수량	(m ³ /일)		
		수질(mg/l)	BOD: , COD: , SS:		
	사용시작일	년 월 일			

「하수도법」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(변경)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(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, 1/200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배출수량란에는 「하수도법」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.
-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.
-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빈칸으로 제출하고,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.